

● 제30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022)

2022. 2.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김태수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3022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안자 : 김태수 의원 발의(찬성 16명)
-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이 조례 목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기피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며, 결산시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조)

- 노인 및 장애인복지자금 용도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위원회 위원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함(안 제16조제1항)
-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16조제3항)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6조의2)
-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II. 검토의견

###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운영근거,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 사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제척·회피·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위촉 해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사항 검토

#### □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안 제1조)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근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1)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기금 자산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1)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 기금 계정의 용도 확대(안 제5조~안 제6조)

-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계정 및 장애인복지계정의 사용 용도를 각각 “노인교육사업 및 민간의 노인복지사업 발굴지원” 및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sup>2)</sup>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재 노인교육사업으로 ‘어르신 정보화교육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계정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6조, 안 제16조의 2, 안 제16조의 3 신설)

- 본 개정안은 계정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소관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의 내용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6조제1항은 계정별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sup>3)</sup>를 반영하는 것인바, 별도 문제는 없으나

2)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촉직 위원의 최소 정원(3분의 1이상)이 개정안에서는 누락 되어 있는바 실제 위원회 운영 시 위촉직 위원이 다수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안 제16조제2항은 계정별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자활, 장애인 및 노인 관련 기관 대표자 및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 를 추가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4)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으로 관련 대표자 및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6조제3항은 위원의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8조5)에서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3년이 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 차례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임.

---

③~⑤ <생략>

4)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⑦ <생략>

- 안 제16조의2는 위원의 제척 등의 대상에 위원의 배우자 및 소속 법인이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례」 제7조6)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임.
-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르면 위원회 중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결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을 두는 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제척사항 등의 추가를 통해 기금 운영의 공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16조의3은 ‘위원의 사망, 질병, 비밀 누설, 비위 사실 등의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례」 제8조의27)에 따라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임. 또한 「서울시 위원회

6)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7. <생략>

7)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계획 수립 시 위촉 해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sup>8)</sup>하고, 기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관련 조례 개정 시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위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근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추가하여 기금의 공공성, 투명성 증진에 기여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 해촉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려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문 의 처

허아름 입법조사관 (02-2180-8145)

8)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5. 3.12 개정·시행)